

#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699호)

## 예비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7. 7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서
- 금번 실시한 결산은 2000년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서 결산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지방의회의 심의·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법률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의미에 불과함.

-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 할 수 없으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위법·부당지출 여부, 계산착오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예산집행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은 부서장의 무사안일과 책임의식 결여에 기인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 답 :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1. 7.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699호)

## 예비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2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7. 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인으로부터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서

- 본 결산은 2000년 회계 연도에 있어서 고성군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 또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집행실적인 것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 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 부당지출, 계산착오, 실제수지와 수지 명령과의 부합여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결산지침 등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공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7.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번호 제700호)

## 예비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28
-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8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7. 6

고 성 군 수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주문

-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함.

### 4. 주요골자

- 별첨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비비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 불입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지출에 대한 사업효과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

- 문 :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른 소송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함이 타당한데도 예비비에서 지급한 사유는
- 답 :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대부분 소송계류 중에 있었으며, 패소한다기보다는 승소할 예정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지급하였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송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소송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음.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1. 7.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